

## 2024년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등록 자격인증 평가 시행계획 공고

2024년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등록 자격인증 평가 시행계획을 「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자격인증 관리 지침」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2. .

(사)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

### 1. 평가종류 및 응시자격

평가종류	응시자격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등록 자격인증 평가(대출·기타 대출성 상품)	평가일 이전 1년 이내에 해당 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등록 자격인증 평가(리스·할부 상품)	

※ 모든 대출성 상품 취급 시 2개 자격인증 평가과정에 모두 합격여야 함

### 2. 평가일정 및 장소

회차	평가일시	응시원서 접수기간	합격자 발표 예정일시	평가지역				정원 (명)
				서울	부산	대전	광주	
제2024-1차	2024.1.27.(토) 10:00~11:30	2024.1.8.(월) 10:00 ~ 1.19.(금) 17:00	2024.2.1.(목) 10:00	●			●	350
제2024-2차	2024.2.24.(토) 10:00~11:30	2024.2.5.(월) 10:00 ~ 2.16.(금) 17:00	2024.2.29.(목) 10:00	●	●	●		450
제2024-3차	2024.3.30.(토) 10:00~11:30	2023.3.11.(월) 10:00 ~ 3.22.(금) 17:00	2024.4.4.(목) 10:00	●				300
제2024-4차	2024.4.27.(토) 10:00~11:30	2024.4.8.(월) 10:00 ~ 4.19.(금) 17:00	2024.5.2.(목) 10:00	●	●		●	450
제2024-5차	2024.5.25.(토) 10:00~11:30	2023.5.6.(월) 10:00 ~ 5.17.(금) 17:00	2024.5.30.(목) 10:00	●		●		350

회차	평가일시	응시원서 접수기간	합격자 발표 예정일시	평가지역				정원 (명)
				서울	부산	대전	광주	
제2024-6차	2024.6.29.(토) 10:00~11:30	2024.6.10.(월) 10:00 ~ 6.21.(금) 17:00	2024.7.4.(목) 10:00	●	●			400
제2024-7차	2024.7.27.(토) 10:00~11:30	2024.7.8.(월) 10:00 ~ 7.19.(금) 17:00	2024.8.1.(목) 10:00	●			●	350
제2024-8차	2024.8.31.(토) 10:00~11:30	2024.8.12.(월) 10:00 ~ 8.23.(금) 17:00	2024.9.5.(목) 10:00	●	●	●		450
제2024-9차	2024.9.21.(토) 10:00~11:30	2024.9.2.(월) 10:00 ~ 9.13.(금) 17:00	2024.9.26.(목) 10:00	●				300
제2024-10차	2024.10.19.(토) 10:00~11:30	2024.9.30.(월) 10:00 ~ 10.11.(금) 17:00	2024.10.24.(목) 10:00	●	●		●	450
제2024-11차	2024.11.16.(토) 10:00~11:30	2024.10.28.(월) 10:00 ~ 11.8.(금) 17:00	2024.11.21.(목) 10:00	●		●		350
제2024-12차	2024.12.7.(토) 10:00~11:30	2024.11.18.(월) 10:00 ~ 11.29.(금) 17:00	2024.12.12.(목) 10:00	●	●			400

- ※ 지역별 고사장에 대한 정보는 응시원서 접수 시 확인 가능
- ※ 응시정원은 원서접수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※ 원서접수는 선착순이며, 응시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음
- ※ 평가 관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

### 3. 평가과목 및 배점

평가과목	문항수	배점	문항형태	평가시간
금융기초	10문항	20점	4지선다형 40문항, 진위형(O/X) 10문항	90분 ※ 종료 30분 전부터 퇴실 가능
금융소비자보호	15문항	30점		
금융상품	15문항	30점		
고객관리	10문항	20점		
합계	50문항	100점 (문항당 2점)	-	-

### 4. 합격기준

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**60점 이상을 득점한 자**

## 5.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료 환불

### ○ 응시원서 접수

구분	내용
접수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터넷(<a href="http://www.lpcrefia.or.kr">www.lpcrefia.or.kr</a>) 접수</li> <li>※ 응시원서의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</li> </ul>
응시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45,000원</li> </ul>

### ○ 응시료 환불

환불요율	내용
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응시원서 접수기간(평가일로부터 7일 전까지)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</li> <li>•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</li> <li>• 천재지변,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의 직계가족 사망, 평가 당일 본인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(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)</li> <li>•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등에 해당하거나, 평가 당일 발열체크 결과 응시제한자로 분류되어 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)</li> </ul>

## 6. 이의신청

구분	내용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별첨2&gt;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(<a href="mailto:edu@crefia.or.kr">edu@crefia.or.kr</a>)으로 제출</li> </ul>
신청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회차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(마감일 17시까지)</li> </ul>

## 7. 평가 관련 문의

○ 문의처 : T. 1522-9581

○ 평가 이외의 등록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<별첨> 1. 응시자 준수 의무  
2. 이의신청서 양식

## 응시자 준수 의무

### 1. 응시원서 접수

- 가.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.
- 나.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### 2. 응시원서 접수 취소

-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평가일의 7일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.

### 3. 응시료

- 가.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나.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응시자가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부를 응시자에게 반환하며,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평가일 7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50%를 응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.

### 4. 응시자 준비물

- 가. 응시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협회가 인정하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외국인등록증, 재외동포 국내거소증) 중 하나를 지참하여야 하며,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.
- 나. 응시자는 수험표,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을 준비하여야 한다.

### 5. 부정행위 등 금지

-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(1) 응시원서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
- (2) 응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응시하는 경우
- (3) 답안지 및 문제지 이외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받는 경우
- (4) 답안지, 문제지 및 답안 및 문제가 표기된 일체의 평가물 등을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하는 경우
- (5)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지 않거나 이용하는 경우
- (6) 평가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표기하는 경우

- (7)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- (8) 타인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는 행위, 평가내용과 관련된 메모나 요약자료를 소지하거나 보는 행위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
- (9) 그 밖에 평가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

## 6. 평가물의 유출금지

- 응시자는 문제지, 답안지, 답안 및 문제가 표기된 일체의 평가물 등을 평가장 밖으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.

## 7. 중도퇴실

- 평가 중 응시자는 질병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사정으로 평가를 끝마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시간(총 90분) 종료 30분 이전까지는 중도 퇴실할 수 없다.

## 8. 답안지 작성

### 가. 답안의 작성방법

- (1)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 해당란 안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.
- (2) 본인의 수험번호를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답안지는 0점 처리한다.
- (3) 한 문항에 2개 이상 표기하거나 표기한 답란 이외에 부정표기하면 오답으로 처리한다.

- 나. 성적처리는 답안 리더기의 처리결과에 따르며, 답안 작성 오류(잘못된 필기구 사용과 부정확한 표기 등)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
